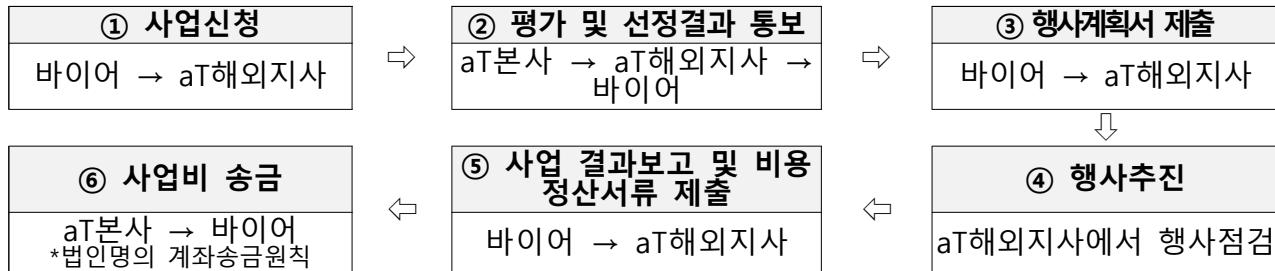


2024년 온·오프라인 해외판촉사업 안내

1. 사업추진 절차



2. 지원기준

1) 판촉형태

- 판촉은 반드시 현지 유통채널 내 행시품목이 입점되어 있어야 하며, 시식 또는 시음활동 필수
- 온라인 판촉 및 시식활동이 어려운 경우 유통매장 내 행사관련 홍보물이나 장치 필수 설치(현수막, 배너, 패널, 매대 설치 등)
- 오프라인 판촉의 경우 유통매장 판촉 없이 단순 제품설명회, 흠크핑 판촉, 카탈로그 제작 등 추진 불가
- 온라인 판촉시 해외 온라인 · O2O 매장 및 플랫폼 활용(온라인시식, SNS 홍보 등)

< 예시 > * 항목별 지원기준 해석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필요

- ① 제품소개나 레시피 콘텐츠 제작 배포, 유튜브, 페이스북 등 활용 미디어 홍보 및 이벤트 실시, 앤드캡, KIOSK 및 E-Pop 스크린, 무인 전용매대 설치, 시식체험을 위한 푸드트럭, 온라인 시식 등
- ② O2O매장 행사 관련 해당사이트 메인페이지, 슬라이딩, 배너광고 제작, SNS, 유튜브 내 쇼핑태그, 링크 등
* 온라인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직접 관련된 곳이거나 '유통매장 전용관'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
(ex 중국 하마선생 유통매장 연계 하마선생앱 홍보 가능, 태국 TheMall 매장 연계 HappyFresh 앱 내 TheMall 전용관 홍보 가능)

2) 사업의무액

- 사업 신청 시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간주하며, 신선품목은 신청예산의 최소 2배, 가공품목은 신청예산의 최소 3배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해야 100% 정산 가능

ex) 신청예산 한화 5천만원일 시 수입의무액 최소 1.5억원(3배) 기재 및 달성 필요

- 판촉행사 품목의 수입의무액으로 행사기간 전후 30일 및 행사기간 동안의 수입 실적으로 달성여부 판단, 미달성 시 달성 비율(%)에 따라 최종지원금 감액 지급

- 현지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하되, 인보이스 제출시는 B/L첨부(수입증빙 제출이 어려울 경우, 협의 후 수출신고필증(이행완료) 제출)
- 중국지역 벤더(경소상) 연계 판촉의 경우, 납품받은 사업자(거래관계 수입상)의 수입대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 시 인정하며 거래관계수입상의 수입(대행)증빙은 판촉기간 전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
-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증빙(계약서 등)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(2배이상) 동시 제출시 인정

3. 기타

- 행사국가, 매장, 품목은 변경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 피한 경우 aT 해외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비는 '선지출, 후정산' 원칙으로 결과보고 시 정산증빙 서류 제출 필요
* 지원항목별 필요 정산 증빙은 각 aT해외지사로 문의